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나1060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나1060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2017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호빈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2017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내용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6행의 “관하여” 다음에 “2021. 5.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1행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B,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추가판단

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피고는, B는 보증사고 발생 시까지 금융기관에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원고 역시 2021. 3. 4. B와의 신용보증약정 과정에서 B에게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요구한 바 없는 등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일반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B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1. 5. 21.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 및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외상채무액이 1,828,557,283원이 이르고 있었던 반면, B 소유 부동산은 B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그 대표자인 C 소유 부동산 역시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 유일하였던바, 피고는 2021. 5. 21. 위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가, 나항 기재 부동산 및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2021. 5. 24. 위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남아 있던 다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2021. 8. 2. 위 순번 1의 다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4. 위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별지 목록 순번 1의 다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위 순번 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3. 안양세무서장의 압류가, 위 순번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7.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가, 위 순번 1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이 순차로 마쳐졌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원고 등 다른 채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보다 4개월 여 앞서 작성된 2020. 12. 31. 기준 B의 재무제표가 건설하였고 원고 역시 그보다 2개월 여 앞서 2021. 3. 4. B와의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한편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제1호)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제7호)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21. 8. 3. B의 사업장인 위 순번 1의 다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 8.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채권 역시 현실적으로 성립하였다.

나.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1) 피고는, B의 2020. 12. 31. 기준 재무제표 상 자산 총액은 2,332,715,875원인데, 적어도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뿐만 아니라 위 자산 총액 중 유동자산 가액 1,324,831,162원 또는 적어도 위 자산 총액 중 유동자산과 남은 비유동자산의 가액 합계 1,648,783,688원(= 자산 총액 2,332,715,875원 - 토지 159,294,100원 - 감가상각된 건물 가치 531,000,887원)은 2021. 5. 2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B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는 피고에 대하여 1,828,557,28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90,000,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인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 원고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각 사전구상금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면 B의 소극재산은 합계 2,138,557,283원(= 피고 1,828,557,283원 + 원고 190,000,000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90,000,000원)에 이른다. 반면, 당시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352,000,000원이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2020.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B의 대차대조표 상의 유동자산 가액 1,324,831,162원 또는 위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 총액 중 유동자산과 남은 비유동자산의 가액 합계 1,648,783,688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최대 2,000,783,680원(= 352,000,000원 + 1,648,783,688원)에 이를 뿐이다. 결국 B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 1) 피고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피고와의 의료장비 임대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취지 등 참조).
- 3)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를 간납업체로 하여 의료법인 T과 사이에 의료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 의료재단에 제공하는 시약 및 의료장비 대금을 B를 통하여 정산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고, 오히려 피고가 B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의료장비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인바(2023. 4. 13.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에게 피고와 사업을 계속하여 번제력을 확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1) 피고는, C의 횡령이 없었다면 B가 위 의료재단으로부터 수령하고 피고에게 미지급한 외상대금은 B의 적극재산으로 남아 있었을 것인데, C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성 자산이 B에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B는 재무제표 상 건실한 구조를 지고 있었으며, 원고 또한 신용보증약정을 연장해 준 바,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B의 관계, 거래 기간,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지혜, 판사 이영범, 판사 권태관

별지

목 록

1.

가. 1동 건물의 표시 : 경기도 군포시 L에 있는 E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M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N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62.2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목적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군포시 L 공장용지 8717㎡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8717분의 40.41

나. 1동 건물의 표시 : 경기도 군포시 L에 있는 E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M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97.1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목적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군포시 L 공장용지 8717㎡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8717분의 24.2

다. 1동 건물의 표시 : 경기도 군포시 L에 있는 E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M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P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7.8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목적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군포시 L 공장용지 8717㎡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8717분의 14.39

2.

1동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노원구 Q에 있는 I아파트 J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R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S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84.84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목적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Q 대 452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528분의 27.185

